

1. 개정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정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정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의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 나. 지진현장정보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지진현장정보체제를 이용하려는 수요 기관의 기상청장과 협의 의무를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전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함(안 별표 2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입법예고 전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를 “서류를 첨부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릴 수 있는”을 “알려야 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기상청장과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 목적, 운영 방법 및 범위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 이용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 등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려면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관측자료 수집률

2. 지진 관측자료 지연시간

3. 그 밖에 관측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분석·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측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지진 관측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기관의 장에게 품질 관련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평가 결과를 관측기관에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의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담당 공무원”으로, “직접 관련 서류를”을 “해당 서

류를 직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 ----- -----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

관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관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
명-----.
--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
를 첨부하도록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

-- 알려야 하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

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
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
체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
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
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
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
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
려는 기관은 기상청장과 지진현
장경보체제 구축 목적, 운영 방
법 및 범위 등 관련 사항을 협
의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
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는 기

<신 설>

<신 설>

관의 장에게 지진현장정보체제 이용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 등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려면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관측자료 수집률
2. 지진 관측자료 지연시간
3. 그 밖에 관측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

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분석 · 평가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기관의 장에게 품질 관련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 · 평가 결과를 관측기관에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